# 기업여신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mark>반드시</mark>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기업대출**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생계유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계대출 상품과 구분됩니다.
- 은행은 대출 가용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 및 각종 담보에 기반하여 대출을 제공하며, 부동산 이외에도 동산·채권 등 다양한 범위의 담보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 (운전자금대출)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시설자금대출) 기업설비의 취득·신설·증설·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 O1.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mark>대출금과 이자</mark>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부분 확인]
  - Q2.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대<del>출금을</del>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상환 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부분 확인]
  - O3. 대출 금리가 높아 금리 인하를 요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되었거나 추가담보제공 등으로 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 나. 금리인하요구권 부분 확인]
-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본 상품설명서의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KB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star.com)** 또는 **고객센터(☎ 1588-99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상품개요 및 특성

계작번호		신청구분	□ 신규 □ 재대출/재약정 □ 대환 □ 기한연장 □ 조건변경 □ 채무인수
상 품 명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 대상 □ 비대상
적용(예상)금리	%	대출금액	<u></u> 원
금리적용방식	□ 변동 □ 고정 □ 기타	대출기간 (또는 만기일)	
금융소비자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여부	3.금융소비자의 권리 > 나.금리인하요구권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

- ✔ 대출금리 변동 등으로 상품설명 단계에서 고객님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은행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b>중도상환수수료</b> : 중도상환대출금액 × (	)% × (대출잔여일수 ÷	· 대출기간)
---------------------------------	----------------	---------

-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이자기회비용 및 행정비용·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 매년 재산정되며, 금리적용방식 및 담보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025.1.13일 이후 신규(재대출/대환 포함) 실행분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단, 2025.1.12일 이전에 신규(재대출/대환 포함) 실행된 계좌는 기존의 금리적용방식 및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1.0%~1.4%가 적용됩니다.
-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만기까지 1**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시) 1년 만기 대출을 받고나서 6개월(184일)후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mark>(중도상환수수료율 0.5% 가정시)</mark>

19	100,000	,000원	x 0.5% x (	(181/365)	)= 247,	,945원
----	---------	-------	------------	-----------	---------	-------

□ 고객부담 인지세: (	)원
□ 고객무남 인시세.(	) วั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_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은행부담	_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 등기관련 법무사 업무처리 비용 등으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기존 근저당권	■ 건당 비용 발생
설정등기의 감액/말소	* 예시) 1건: 45,000원, 2건 이상: 1건당 10,200원 추가
기존 근저당권	■ 건당 비용 발생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	* 예시) 1건: 30,000원, 2건 이상: 1건당 10,000원 추가
확인 서면	■ 법무사 보수료 발생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 예시) 1건: 30,000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 채권할인율(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예시) '21.7.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750원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5조 1항 단서
	에서 정한 중소기업은 제외)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mark>면제</mark> 가능합니다.

### □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 다만,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근저당권 설정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수수료 * 예시) 대출금액 2억(채권최고액 2.2억) 기준 등록세44만원+교육세8.8만원+등기신청수수료1.5만원+법무사수수료19.9만원 =74.2만원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원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 예시) 일반지역 15,000원, 원거리지역 22,000원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 주소지,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 예시)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 약 94만원(수수료 88.4만원 + 실비 5.6만원)

□ 기타 수수료:	항목 ()	금액 <u>(</u>	<u>)원</u> / 항목 <u>(</u>	<u>)</u> 금액 <u>(</u>	)%
□ 기타 비용:	항목 ( )	금액 <u>(</u>	<u>)원</u> / 항목 <u>(</u>	<u>)</u> 금액 <u>(</u>	)%

- 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mark>채무자가 부담</mark>하여야 합니다.
-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은행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 3. 금융소비자의 권리

### 가. 청약철회권

-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온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가 삭제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mark>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mark>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제30조의2)를 말합니다.
  - ※ 신용상태 개선 판단 사유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 원화지급보증, 순구매방식의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제3자(판매기업)이자부담방식의 구매론, 지정어음)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모바일,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다.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라, 자료열람요구권

-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①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4.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

⊙ 대출금리의 종류는 크게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_\_\_\_\_*]* 방식의 상품입니다.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del>운용</del> 형태	금리	급리
특징	<ul><li>→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약정기간 까지 동일하게 유지</li></ul>	▶ 일정주기(3/6/12개월 등) 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장점	▶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단점	<ul> <li>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li> <li>불리</li> </ul>	<ul> <li>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li> <li>※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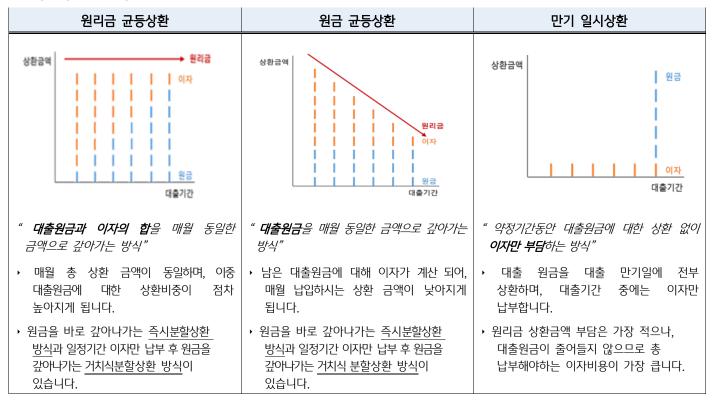
- ※ 상기 외 기타 금리적용방식: 정책자금대출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경우
-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② 가산금리						
① 대출 기준금리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 이익률	전결조정금리	= ③ 최종금리
자금조달금리		[+] 리	스크관리비용 등	등 원가		[+] 마진	[ <b>+, -</b> ] 가감조정 전결금리	= 최종 금리

- ①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②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 원가요소: 고객의 신용도·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업무원가(인건비·전산처리비용),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목표이익률: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영업점 전결 조정금리 등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영업점 전결 조정금리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용등급 변동,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상환방법별 특징



- ※ 상기 외 기타 상환방법: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일부 분할상환제도 등 별도로 정한 경우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환방법은 / 7 입니다.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5%로 대출받은 경우)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상환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1,810만원	500만원	2,310만원	8,190만원
2년	1,900만원	410만원	2,310만원	6,290만원
3년	1,995만원	315만원	2,310만원	4,295만원
4년	2,095만원	215만원	2,310만원	2,200만원
5년	2,200만원	110만원	2,31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50만원	1.155억원	_

#### • **원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2,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2년	2,000만원	400만원	2,400만원	6,000만원
3년	2,000만원	300만원	2,300만원	4,000만원
4년	2,0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
5년	2,000만원	100만원	2,10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00만원	1.15억원	_

###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 <del>환금</del> 액	대출잔액
1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2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3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4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5년	1억원	500만원	1.05억원	0원
합 계	1억원	2,500만원	1.25억원	_

### ⊙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mark>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mark> 있습니다.

### 6.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mark>소유권을 상실</mark>하게 됩니다.
  -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가. 연체이자 부담

-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 **원화 및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에서 대신 지급한 금액)은「상법」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에 연 3.0%p를 더하여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에 따릅니다.

###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①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②「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mark>기한의</mark>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③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①~③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⑤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⑥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중 발췌)

- (1)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3) 파산 · 화의개시 ·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때
-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한 때
-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mark>즉시 상환</mark>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나. 그 밖의 불이익

- ①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ㅎ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긴 경우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정책자금대출, 협약대출 등)의 경우 <mark>자격이 유지되는 경우</mark>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9.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③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mark>개인신용평점이 하락</mark>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 기타 유의사항

- ⊙ 기업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금지
  - **기업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이란 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금용도 외 유용 시 해당 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업대출의 거래 상대방
  -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개인이자 자연인으로서 여신거래를 하며, 법인 등의 경우 대표이사가 여신거래를 하나,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대표격이 확인 된 대표이사에 한합니다.
- ⊙ 기업대출의 유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 여신거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은 여신거래 유지 및 갱신 등을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및 매출관련 자료 등을 매년 1회 이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대출의 지속가능 조건
  - o 기업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 폐업 등 존속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여신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 법인에 대한 기업여신 등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는 가능하나, 실질경영자나 관계기업이 아닌 제3자의 연대입보는 불가합니다.
- ⊙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은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고객이 정한 매월 이자 납입일 또는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 '<mark>매일의 잔액'</mark>은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하루 중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때에는 마감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이용 시, 체크카드 결제계좌를 대출계좌로 설정하는 경우,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한도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대출사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됩니다.
- ⊙ 보증부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기관과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B2B 관련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 구매기업이 물품·목적물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기업에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대출이자 또는 할인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매기업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mes.go.kr/poll)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11. CD수익률 설명에 관한 사항 ☜ 3개월 변동금리 대출 등 CD수익률 관련 대출계약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가.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 ⊙ CD수익률의 정의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시 중요지표 설명 의무가 발생 합니다.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91일 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 나.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 ⊙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 ⊙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 (1)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 (2)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 다.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 ⊙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 (1)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 (2)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 (3) Level 3 (전문가적 판단):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 ⊙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 ⊙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2)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라. CD 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오류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② 오류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2) 오류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①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②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③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④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⑤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2)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마.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o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적격거래 (2)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3)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4)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 (5)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6)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 ⊙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2)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바.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2)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 ⊙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 (2)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3)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4)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 (5)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6) 산출업무의 他 |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o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가장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평균금리(민평 CD수익률)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 단, 사용기관과 채무자(계약자)간 개별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대체금리를 적용합니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기관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12.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안내여부 확인

-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이 예 / 이 아니오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2)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 ㅇ 예(해당사항 없는 경우 포함) / ㅇ 아니오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3)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님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ㅇ 예(해당사항 없는 경우 포함) / ㅇ 아니오
-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sup>주)</sup>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단, 금리인하요구 권 대상 대출인 경우에 한함)
  - 주) ·재무상태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개선 판단한 경우 등
- → 본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 → 본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서명/인) 고객확인: 20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KB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 명					
개별거래	• 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도거래	■ 고객과 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두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ul> <li>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li> <li>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기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li> </ul>					
근질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질권설정을하더라도설정자(담보물소유자)는소유권을상실하지는 않지만채권자가담보물을 점유하고채권자가청구하면소유권을상실합니다.					
양도담보	■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담보물 소유자)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담보신탁	<ul> <li>위탁자(소유자)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li> <li>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공메)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li> </ul>					
대위변제	■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채권양도	■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구채권자)로부터 제3자(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암차인인채무자가임대인(구채권자)에게 갖는 암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산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ul> <li>■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li> <li>■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li> <li>■ 다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li> </ul>					
신 <del>용</del>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재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 <del>용평</del> 점	■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ul> <li>■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li> <li>■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은행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li> </ul>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Income)	<ul> <li>●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li> <li>●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li> </ul>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Debt- Service-Ratio)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					
전세권	■ 암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